

파주시시세감면조례종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정이유

-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일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를 취득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면 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의 추징사유가 되지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였던 자동차를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단서 조항의 자동차세 추징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 나)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경감없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적용코자 개정함.(안 제7조)
- 다) 감면조항의 자구형식이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타 조항과 불일치하여 적용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명확성 제고를 위한 조문을 정리함.(안 제10조제2항)

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동조 제2항)

마) 기존의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리함.(안 제13조제1항)

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안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 정리가 필요함.(안 제19조)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중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에서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등 새로운 법령 제정과 법령의 분리, 대체법안 마련등에 따라 감면조례에 명기된 관련법령의 명칭과 조항등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서
-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장관의 개정지시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면조례 개정준칙안이 금년 1월 4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법령 적합성에 문제점이 없음.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06852호] 시행일 2003.07.01

第9條(課稅免除等を 爲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나. 내용타당성

○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으로 동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단서내용”과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단서내용”에 규정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추정내용은 사용중 매각할 경우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면제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사실확인이 어렵고 사후 소급추정도 불합리하여 동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 둘째, 조례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경감하던 것을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등 노인복지법을 적용받는 모든 시설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각각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 셋째,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2항 중 “도시계획법”을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또한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제1항과 제2항 중 “도시계획법 명칭과 관련조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련조항”으로 각각 개정하였음.
- 끝으로,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1항 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 또한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 근거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개정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법령명칭과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상의 내용은 도의 준칙안대로 적정하게 마련되어 내용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